

	보 도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김홍식 단장(2156-3300), 황현일 사무관(2156-3311)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장준경 국장(3145-8100), 이해송 팀장(3145-8470)
배포부서	금융위원회 대변인실(2156-9543~48),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6~92)		
배 포 일	2015. 9. 9. (수)		총 4매

제 목 :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p><input type="checkbox"/>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9. 9. 제16차 정례회의에서</p> <p>(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네이처셀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p> <p>(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정화금(주)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p> <p>(3) 비상장법인 네파(주)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p> <p>(4)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동양건설산업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p> <p><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p>
--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 02-2156-3333)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붙임>

위반자별 위법사실

번호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
1	(주)네이처셀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중요사항 거짓기재	- 과징금 30,000,000원
2	대정화금(주)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3,000,000원
3	네파(주)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20,000,000원
4	(주)동양건설산업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발행제한 3월

1. (주)네이처셀

(주)네이처셀은 2012. 11. 16., 2012. 12. 26. 각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각각 동일자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제3자배정 목적이 당시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음에도 각 주요사항보고서의 제3자배정 목적 란에 '사업상 중요한 연구개발' 등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음

2. 대정화금(주)

대정화금(주)는 2013. 2. 15. 이사회에서 계열회사 대정이엠(주) 주식 596,880주를 2011년말 자산총액 706.5억원의 12.5%에 해당하는 88.4억원에 양도할 것을 결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네파(주)

네파(주)는 외감대상법인으로서 2012년말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한 결과 주주수가 500명 이상임이 확인되어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되었으나 법정기한인 2013. 4. 1.까지 그 직전 사업연도인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주)동양건설산업

(주)동양건설산업은 2013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4. 3. 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8일 지연한 2014. 4. 10. 제출한 사실이 있음